

# 202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 I 사업 개요

###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5년 사업비 : 22,254백만원\*(국비 10,826백만원, 지방비 5,702, 융자 3,477(이차보전), 자부담 2,249)

\* 항목별 보조율 차이로 '25년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8월경(지자체별 공고)

###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기전사업부	부 장 장이욱 과 장 최윤희	061-338-5371 061-338-5650

※ 시·군·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과수·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구가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① 채소·과수·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난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확기 조정을 위한 가온재배를 배제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 받은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사업 지원 불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업인과 결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 (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스마트팜(CT융복합확산)의 지원제한 중인 자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청장 종합검토 필요)
- 시·군·구청장은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 일반지원요건

###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나. 사업비 확보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머섯재배사,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m<sup>2</sup> 이상

####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①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②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③ ① 또는 ②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성능(열관류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성능을 인정한 경우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이하로 지원된 시설
  -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 절감률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li>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li> </ul>
지열·폐열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li> <li>*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li> </ul>
목재펠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li> <li>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li> </ul>
공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ul>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지열·폐열 신규설치는 2년(1년차 50%, 2년차 50%), 그 외는 1년

- 2년 사업의 경우 1년차 50%, 2년차 5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지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비 감액 배정\*\* 또는 후순위 교부 가능

\* 2025년 사업추진계획 작성·취합 일정은 별도 공지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지원형태(보조율)

구 분		보조		용자 (이차보전)	자부담
		국비	지방비		
공기열냉난방시설		40%	30%	2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30%	20%	20%
	지열·폐열냉난방시설	60%	20%	1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제외)~~

- 용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1차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용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용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용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용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 업 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폐열·공기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공기열)

- 과거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존 지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신청일 기준) 필요

- 동일 시설(온실 등 재배시설 기준)에 대해 2회까지 지원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폐열·공기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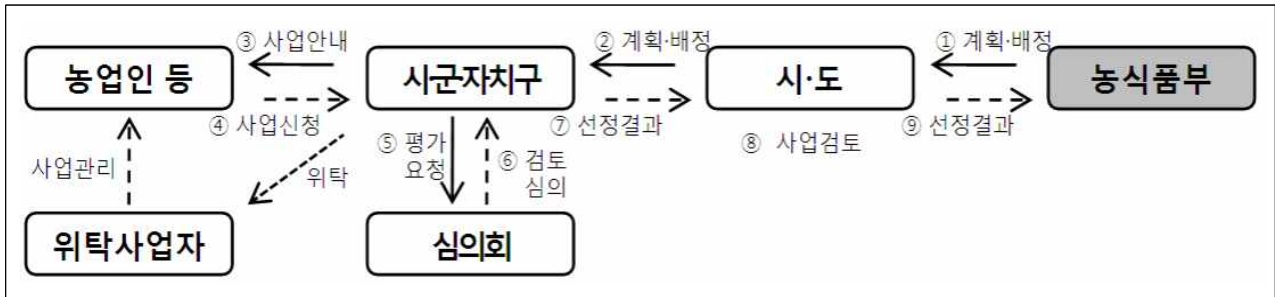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li><li>○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li><li>*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li></ul>

### Ⅲ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 시·군·구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9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별지 제6호 조사서 첨부)하여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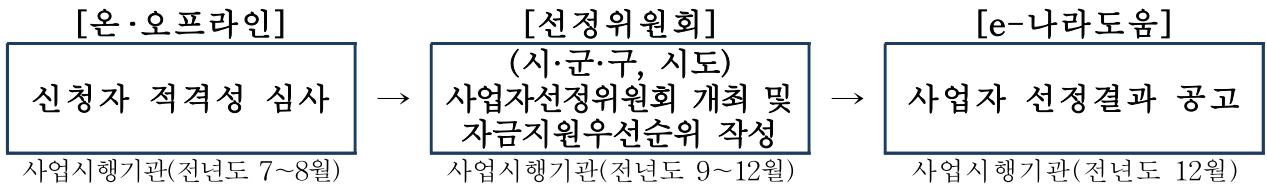
### < 주의사항 >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용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용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CT융복합확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구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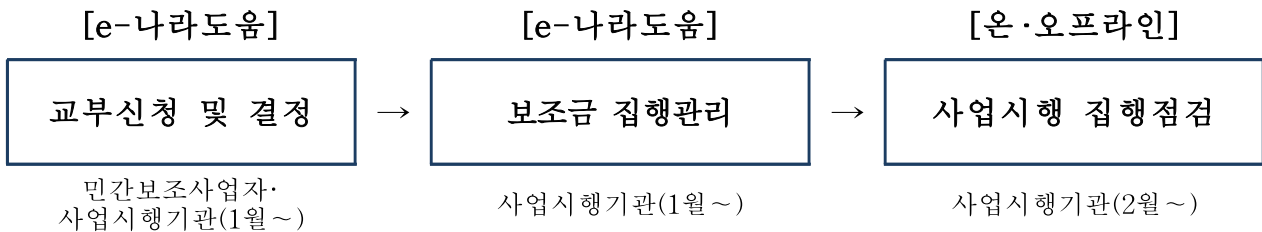
**시·군·구**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군·구청장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자금집행

####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군·구청장은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군·구청장은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용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용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용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우선집행(100%)해야 함(위탁시행시 위탁시행기관에 사업비 이체 시점 기준)

###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구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융자 대출을 신청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 후 융자 실행 추진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사업 시행 단계

#####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구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구(사본)에 제출
  -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구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설계·시공·감리

- 시·군·구청장은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군·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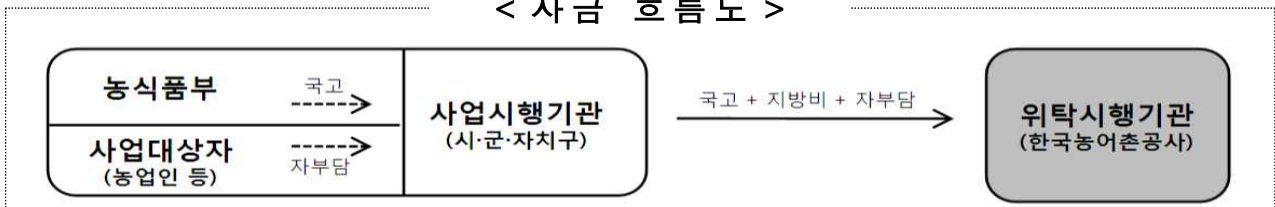
- 시·군·구청장은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군·구청장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군·구청장은(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 1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자부담은 사업연도 5월까지 이체해야하며, 자부담 미이체시 시·군·구는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서, 1년차에 설계완료 및 공사착수, 2년차에 공사 준공
- 자가설계 방식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 \* (요청) 1년차 4월까지 → (심의·검토) 5월 → (반영) 6~7월 → (공사발주) 7~8월

### < 자금 흐름도 >



###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구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군·구청장은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구 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합 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기 효율의 75%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구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 나. 업무 추진단계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구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용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용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여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군·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 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구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협약 시 별도로 정함)

### 사업 포기, 이월

####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 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판성 또는 지연 편성~~
  -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산결과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을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 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교체)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사업 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통보

####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 1.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5.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5.3월) → 사전컨설팅(~'25.7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5.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5.12월) → 사업추진('26.1월~)

###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장소 : 시·군·구
- 신청기한 : '25. 7~8월경(지자체별 별도 정함\*)
  - \* 시·군·구별로 지침에 따라 공고·접수하며, 시·도는 소관 시·군·구 예비사업자 명단을 취합하여 8.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격 : '25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5년도 사업 내용 참조
  - ※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p>II.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li> </ul> <p>2. 지원자격 및 요건</p> <p style="text-align: center;"><b>지원자격</b></p> <p>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 - 고정식 <u>재배시설</u>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II. 사업시행 주요내용</p> <p>1. 사업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u>과수</u>·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li> </ul> <p>2. 지원자격 및 요건</p> <p style="text-align: center;"><b>지원자격</b></p> <p>① 채소·<u>과수</u>·화훼·버섯류 재배 ----- - 고정식 <u>재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수직농장)</u>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 - <u>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중사 경력자(신청 품목 1년 이상)</u>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u>난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확기 조정을 위한 가온재배를 배제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 받은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사업을 통해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사업 지원 불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 추가</li> <li>* 중앙규제 개선과제</li> <li>○ 지원 품목에 과수 추가</li> <li>○ 지원대상 재배시설에 수직농장 포함</li> <li>○ 경력 요건 추가</li> <li>○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과 관계 명시</li> </ul>
<p>&lt;지원제외 대상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대출금</u>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li> <li>▪ <u>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u>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li> <li>▪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에 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li> </u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지원제외 대상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책자금(용자·이차보전)</u>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li> <li>▪ <u>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u></li> <li>▪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u>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에 분야 사업(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u></li> <li>▪ <u>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u></li> <li>▪ <u>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u></li> <li>▪ <u>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에 사업(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금 미납부에 따른 사업제한을 의무자조금으로 한정, 기간 설정</li> <li>○ 사업 구체화</li> <li>* 2024년 총청북도 정부합동감사(24.3.) 권고에 따른 2024 지침 개정 사항 반영</li> <li>○ 수확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중복지원 배제</li> <li>○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우선지원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u>시장·군</u></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우선지원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u>시·군·</u></li> </ul>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p><u>수"라 합</u>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u>시장·군수</u> 종합검토 필요)</li> </ul>	<p><u>구청장</u>)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화재·<u>대설</u>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u>시·군·구</u> 종합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 통일</li> <li>※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li> </ul>
<p><b>일반지원요건</b></p> <p><b>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 시설</del> : 연면적 600㎡ 이상</li> </ul> <p><b>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재배온실(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li> </ul> <p>&lt;신 설&gt;</p>	<p><b>일반지원요건</b></p> <p><b>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버섯재배사,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del> : 연면적 600㎡ 이상</li> </ul> <p><b>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재배온실(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li> </ul> <p><b>③ ① 또는 ②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성능(열관류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b>가 그 성능을 인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불일치 사항 조정</li> <li>○ 이중 피복이 아니나 성능이 우수한 PC 온실 등 포함</li> </ul>
<p><b>4. 지원형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재원</li> <li>-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li> </ul> <p>○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 (1년차 50%, 2년차 50%)</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형태</li> <li>- 용자(이차보전) 금리 : -----</li> <li>** 변동금리 대출은 <u>당해 연도</u>에 한하여 선택 가능</li> <li>- <u>용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u></li> </u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4. 지원형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재원</li> <li>- 용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li> <li>* <u>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u></li> </ul> <p>○ 사업기간 : 지열·폐열 신규설치는 2년 (1년차 50%, 2년차 50%), <u>그 외는 1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2년 사업의 경우 1년차 50%, 2년차 5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지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u></li> <li>- <u>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비 감액 배정** 또는 후순위 교부 가능</u></li> <li>* 2025년 사업추진계획 작성·취합 일정은 <u>별도 공지</u></li> <li>**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li> </ul> <p>○ 지원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이차보전) 금리 : -----</li> <li>** 변동금리 대출은 <u>사업 1차연도</u>에 한하여 선택 가능</li> <li>- <u>용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u></li> <li>- <u>용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요건을 충족하면 용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u></li> <li>* 「<u>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u>」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용자 실행</li> <li>- <u>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li> <li>○ 문구 조정</li> <li>○ 사업기간 조정 내용 추가</li> <li>○ 연간 사업계획 추가</li> <li>○ 2년 이상 사업 고려</li> <li>○ 용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li> <li>- 용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 후 차후 용자 실행되면 보전</li> <li>- 배치 조정</li> </ul>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p>-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p>	<p>○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p>	<p>○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 타지 사업신청사 사업신청 가능 유지</p>
<p><b>5. 지원 기준단가</b> <b>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b></p> <p>○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p> <p>&lt;신 설&gt;  &lt;신 설&gt;</p>	<p><b>5. 지원 기준단가</b> <b>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b></p> <p>○ 성능개선(지열·공기열·폐열) - 과거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p> <p>○ 기존 지원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사후 관리기간이 경과(신청일 기준 필요) - 동일 시설(온실 등 재배시설 기준)에 대해 2회까지 지원</p>	<p>○ 성능개선에 공기열 추가</p> <p>○ 기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경과 요건 추가</p> <p>○ 개보수 지원 가능 횟수 제한</p>
<p><b>III. 사업추진체계</b> <b>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b></p> <p><b>사업대상자</b></p> <p>-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p> <p>&lt;신 설&gt;</p>	<p><b>III. 사업추진체계</b> <b>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b></p> <p><b>사업대상자</b></p> <p>- 사업신청서 작성 시 <u>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u>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별지 제6호 조사서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lt;주의사항&gt;</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li> <li>▪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용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용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총당해야 할 수 있음</li> <li>▪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에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li> </ul> </div>	<p>○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 반영 사업 신청</p> <p>○ 주의사항 추가</p>
<p><b>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b></p> <p><b>자금집행</b></p> <p><b>시·도, 시·군</b></p> <p>○ 시장·군수는 원활한 -----</p> <p>&lt;신 설&gt;</p>	<p><b>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b></p> <p><b>자금집행</b></p> <p><b>시·도, 시·군·구</b></p> <p>○ 시장·군수는 원활한 -----</p> <p>- 용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p> <p>-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용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p>	<p>○ 용자분 집행 내용 명시</p> <p>○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p>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li> <li>-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u>다음해 6월 15일까지</u>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u>6월 20일까지</u> 농식품부에 제출</li> <li>- <u>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u></li> <li>○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li> <li>*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li> </ul>	<p><u>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 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u></li> <li>- <u>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li> <li>- <u>시·군·구청장은</u> 사업대상자가 <u>다음해 6월 15일까지</u>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u>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u> 농식품부에 제출</li> </ul>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li> <li>* <u>연간 사업비의</u>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u>다만,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u>,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지출 보전</li> <li>○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li> </ul>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기간 재연장 규정 문구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규정에 맞게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명확화</li> </ul>
<p><b>농협은행(농·축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li> </ul> <p>&lt;신 설&gt;</p>	<p><b>농협은행(농·축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li> <li>- <u>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총량분 보전 규정 추가</li> </ul>
<p><b>사업대상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li> </ul> <p>&lt;신 설&gt;</p>	<p><b>사업대상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li> <li>- <u>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 후 융자 실행 추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당해 연도 보조금 및</u>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li> <li>-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u>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당해 연도 보조금 및</del>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li> <li>-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u>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간 연장 분리</li> <li>-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li> </ul>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p>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p> <p>*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p> <p>-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p> <p>&lt;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li> <li>▪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li> <li>▪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p>- 보조금 이월 구체화</p>
<p>4. 사업 시행 단계</p> <p><b>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b></p> <p>○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4. 사업 시행 단계</p> <p><b>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b></p> <p>○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p> <p>-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p> <p>- 자가설계 방식인 경우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p> <p>* (요청) 1년차 4월까지 → (심의·검토) 5월 → (반영) 6~7월 → (공사발주) 7~8월</p>	<p>○ 시·군·구 직접수행 가능하도록 완화</p> <p>○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혼선 우려</p>
<p><b>시·도, 시·군</b></p> <p>-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 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p>	<p><b>시·도, 시·군·구</b></p> <p>&lt; 삭 제 &gt;</p>	
<p><b>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b></p> <p>&lt;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gt;</p> <p>다. 단계별 업무 내용</p> <p>4) 시공단계</p> <p>○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p> <p>&lt;신 설&gt;</p>	<p><b>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b></p> <p>&lt;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gt;</p> <p>다. 단계별 업무 내용</p> <p>4) 시공단계</p> <p>○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p> <p>- 용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용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p>	<p>○ 용자분 미확보 시 조치 근거 추가</p>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포기</b></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포기, 이월</b></p> <p style="text-align: center;"><b>시·군·구</b></p> <p>○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또는 이월 집행하려는 경우, 사업포기 또는 이월 집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p> <p>○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p> <p>○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p>	<p>○ 시·군·구 역할 추가</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관련 시설 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p> <p>○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관련 시설 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p> <p>○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대상자</b></p> <p>○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p> <p>○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 사업대상자 역할 표시</p> <p>○ 보조금 반납 규정 추가</p> <p>○ 이월 내용 추가</p> <p>○ 포기, 이월 불이익 배치 조정</p> <p>* (기존) III. 사업시행 주요내용 &gt;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gt; 사업 포기 → (변경) III.사업시행 주요내용 &gt;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gt; 제재 및 처벌내용 &gt; 시·도, 시·군·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재 및 처벌내용</b></p> <p style="text-align: center;"><b>시·도, 시·군</b></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재 및 처벌내용</b></p> <p style="text-align: center;"><b>시·도, 시·군·구</b></p> <p>○ 사업 포기(사유 없는 미착수 포함)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p> <p>* 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p> <p>-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p> <p>- 이월하여 집행한 지는 준공일 이후 2년간</p> <p>-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p> <p>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p> <p>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p> <p>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p>	<p>○ 포기, 이월 불이익 배치 조정</p> <p>* (기존) III. 사업시행 주요내용 &gt;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gt; 사업 포기 → (변경) III.사업시행 주요내용 &gt;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gt; 제재 및 처벌내용 &gt; 시·도, 시·군·구</p>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b>※ 별지, 별첨</b>																													
<b>[별지 제1호 서식]</b> <b>(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b>  <table border="1" data-bbox="169 645 604 801"> <thead> <tr> <th>사업명</th> <th>세부사업</th> <th>신청시설</th> </tr> </thead> <tbody> <tr> <td>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td> <td><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시설</td> <td><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td> </tr> </tbody> </table>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b>[별지 제1호 서식]</b> <b>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신청서</b>  <table border="1" data-bbox="630 645 1066 824"> <thead> <tr> <th>사업 종류</th> <th>설계유형</th> <th>신규여부</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지열</td> <td><input type="checkbox"/> 위탁</td> <td><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폐열</td> <td><input type="checkbox"/> 자가</td> <td><input type="checkbox"/> 개보수</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td> <td></td> <td></td> </tr> <tr> <td>공기열(<input type="checkbox"/> 공기대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대물)</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사업 종류	설계유형	신규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공기대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대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과 분리</li> <li>- 시설보급 내용 삭제</li> <li>○ 사업유형에 맞춰 수정</li> </ul>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사업 종류	설계유형	신규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공기대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대물)	-	-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b>&lt;신 설&gt;</b>	<b>&lt;삭 제&gt;</b>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li> </ul>																											
<b>[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b>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table border="1" data-bbox="169 1142 604 1232"> <thead> <tr> <th>사업종류</th> <th><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자(법인)명</td> <td>대표자명</td> </tr> </tbody> </table>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b>[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b>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630 1142 1066 1288"> <thead> <tr> <th>사업 종류</th> <th><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th> </tr> </thead> <tbody> <tr> <td>신규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td> </tr> <tr> <td>사업자명(개인·법인)</td> <td>대표자명</td> </tr> </tbody> </table>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사업자명(개인·법인)	대표자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열 종류 구분 및 신규 여부 추가</li> <li>○ 개인·단체 사업자 명확화</li> </ul>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사업자명(개인·법인)	대표자명																												
<b>[별지 제5호 서식]</b> <b>(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b>  <table border="1" data-bbox="169 1444 604 1624"> <tbody> <tr> <td>선정사업</td> <td><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td> <td><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td> </tr> <tr> <td rowspan="2">선정시설</td> <td><input type="checkbox"/> 시설원예현대화</td> <td><input type="checkbox"/> 지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화훼 류신수출</td> <td><input type="checkbox"/> 폐열</td> </tr> <tr> <td rowspan="2">유형</td> <td><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보급</td> <td><input type="checkbox"/> 공기열</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장비</td> <td><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td> </tr> <tr> <td></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td> </tr> </tbody> </table>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선정시설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예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화훼 류신수출	<input type="checkbox"/> 폐열	유형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보급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장비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b>[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b> <b>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서</b>  <table border="1" data-bbox="630 1444 1066 1624"> <tbody> <tr> <td>선정사업</td> <td><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td> <td><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td> </tr> <tr> <td rowspan="2">사업 종류</td> <td><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td> <td></td> </tr> <tr> <td>신규 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td> </tr> <tr> <td>대상자 유형</td> <td colspan="2"><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td> </tr> </tbody> </table>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대상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과 분리</li> <li>○ 시설보급 내용 삭제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종류 구체화</li> </ul>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선정시설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예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화훼 류신수출	<input type="checkbox"/> 폐열																											
유형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보급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장비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대상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b>[별지 제8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b> <b>(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 추진상황 보고</b>  <table border="1" data-bbox="169 1780 604 1848"> <thead> <tr> <th>...</th> <th>사업구분</th> <th>세부내역</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사업구분	세부내역	...					<b>[별지 제8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b> <b>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b>  <table border="1" data-bbox="630 1780 1066 1848"> <thead> <tr> <th>...</th> <th>사업종류</th> <th>신규여부</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사업종류	신규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과 분리</li> <li>- 시설보급 내용 삭제</li> <li>○ 신규여부 추가</li> </ul>											
...	사업구분	세부내역	...																										
...	사업종류	신규여부	...																										
<b>[별지 제10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b>	<b>[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b> <b>(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li> <li>※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li> </ul>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	생년월일	사업비	...	..	생년월일	사업명	하위사업명	사업비	..	
[별지 제10-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a href="#">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li> <li>※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li> </ul>		
...	제재사유	포기(이월)	...	...	제재사유	사업명	포기(이월)	...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대상자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대상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 온실 ㎡	일반온실 ㎡	버섯재배사 ㎡	수직농장 ㎡
		축산	무창돈사 마리	무창계사 마리	무창오리사 마리	무창분만돈사 마리	무창임돈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	예냉·저장·선별 ㎡	관수시설 식	환경제어 식	기타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	온수난방 ㎡	온수보일러 ㎡	태양열병합 ㎡	기타 ㎡	
		가온 방식	고체연료 ㎡	유류·가스 ㎡	전기 ㎡	지열·지중열 ㎡	기타 ㎡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종류			설계유형	신규여부	신청면적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위탁설계, <input type="checkbox"/> 자가설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
			<input type="checkbox"/> 폐열					
			공기열 ( <input type="checkbox"/> 공기대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대물 )			-	-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사업비 적정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해당 내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p> <p>☞ 스마트팜-에너지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냉난방시설, 냉난방비용,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p>☞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별지 제3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4) 1부</p>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 가. 사업자 개요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명 (개인·법인)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수출참여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난방	온수난방	기타		현재용량	인입거리	비상발전기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년	kW	m	kW

###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sup>2</sup>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25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3(A)						
	2024						
	202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3(A)						
	2024						
	202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sup>2</sup>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sup>2</sup>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4		2025		202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sup>2</sup>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자명 (개인·법인)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수출참여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영방법
명칭	설치연도					
		m <sup>2</sup> /대	백만원	톤		*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25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3(A)						
	2024						
	202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3(A)						
	2024						
	202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백만원	실거래가 백만원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m <sup>2</sup>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m <sup>2</sup> )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입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공기열(공기), <input type="checkbox"/> 공기열(물)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신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사업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단위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m <sup>2</sup> /마리		m <sup>2</sup> /마리		m <sup>2</sup> /마리							
		난방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지열냉난방(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del>                    </del>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저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고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내역	신규여부	사업량 m <sup>2</sup>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sup>2</sup>		%														

주1) 작성요령

-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가. 사업구분 : 지열, 폐열, 공기열(공기), 공기열(물), 목재펠릿
  - ~~ICT융복합확산 : 시설원에현대화,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장비, 에너지절감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 나. 세부내역 : 지열(신), 지열(개), 폐열(신), 폐열(개), 목재펠릿, 공기열(물), 공기열(공기)
  - ~~시설원에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중구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스마트팜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난방기~~
- 다. 신규여부 : 신규, 개보수
-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 연도	시도 명	시군 명	사업 자명	생년 월일	사업 명	하위 사업 명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주1) 작성요령(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나. “사업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다. “하위사업”: 사업별로 하위사업 작성

– 시설보급 :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 온실신축 : 신축, 개축

– 신재생에너지 : 지열(신), 지열(개), 폐열(신), 폐열(개), 목재펠릿, 공기열(물), 공기열(공기)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사업포기 · 이월 제재 사업자 현황

연번	사업자 현황			사업 현황							제재 시작 <sup>4)</sup>	제재 종료 <sup>5)</sup>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재 사유 <sup>1)</sup>	사업 명 <sup>2)</sup>	포기 (이월) 사업연도	포기 (이월) 사업명	포기 (이월) 사유	제재 여부	제재 예외 사유 <sup>3)</sup>		

※ 작성요령(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엑셀로 작성 관리)

1) 포기 또는 이월로 기재

2)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중 택1

3) 아래 1부터 6까지 사유 중 택1하여 해당 숫자 기재(단, 6번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기)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포기)사업 포기일, (이월) 준공일

5) (포기) 포기일 이후 3년이 되는 날, (이월) 준공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3. 생산·유통 참여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미충족 ( )				
조 사 항 목		배 점				특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 이상(5), 75mm 이상(3), 75mm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2) <small>*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small>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특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자 선정기준표[목재펠릿난방기]

단체명(시·군·구명):  총득점: (     ) 점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3. 생산·유통조지 참여경영체 (여/부)

###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적정(10점)</li> <li>▪ 적정(7.5점)</li> <li>▪ 보통(5점)</li> <li>▪ 미흡(2.5점)</li> <li>▪ 매우미흡(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0점)</li> <li>▪ 높음(7.5점)</li> <li>▪ 보통(5점)</li> <li>▪ 낮음(2.5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     ) 점

###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이전:            개월</li> <li>▪ '18년:                    개월</li> <li>▪ '19년:                    개월</li> <li>▪ '20년:                    개월</li> <li>▪ 합계:                    년            개월</li> </ul>	(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 3.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     ) 점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 점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5점): (     ) 점

###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썩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튤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츰니아, 팬지, 프리몰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 ~ 30	35
고추	13	16	23 ~ 30	35
가지	13	16	22 ~ 30	35
파프리카	15	18	25 ~ 30	35
토마토	10	16	25 ~ 30	33
호박	10	11	23 ~ 25	35
오이	8	12	25 ~ 28	35
참외	8	11	22 ~ 28	35
수박	10	13	25 ~ 30	35
무	8	11	15 ~ 20	25
딸기	3	6	17 ~ 20	30
배추	5	8	13 ~ 18	23
상추	5	8	15 ~ 20	25
시금치	5	8	15 ~ 20	25
샐러리	5	8	15 ~ 20	25
썩갓	5	8	15 ~ 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 ~ 25	30
장미	5	15	24 ~ 27	30
아나나스	12	15	20 ~ 25	30
야자류	12	15	25 ~ 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 ~ 25	30
백합	13	16	20 ~ 25	30
국화	7	15	18 ~ 20	30
거베라	7	13	16 ~ 20	30
고무나무	10	13	25 ~ 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 ~ 30	35
동양란	10	13	20 ~ 25	40
선인장	10	13	25 ~ 30	50
카네이션	7	13	15 ~ 21	30
철쭉	4	8	20 ~ 25	35
프리지아	7	10	13 ~ 16	30
튜울립	5	10	15 ~ 20	30
아이리스	7	10	15 ~ 20	30
숙근안개초	7	10	15 ~ 18	20
금어초	7	10	15 ~ 20	25
스톡크	7	10	20 ~ 25	25
팬지	7	10	15 ~ 20	25
데이지	7	10	15 ~ 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 ~ 20	25
시크라멘	7	10	18 ~ 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 시설원에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에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시설원에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준영구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시설원에 분야 사업 업무 추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년 (목적달성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p>사 업 개 요</p> <p>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자 ○ ○ ○</p>	80 cm
110cm	

#### 나. 준공후 안내문

<p>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21 cm
30cm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